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3드단○○○○○ 이혼
원 고 이AA

피 고 조BB

변 론 종 결 2014. 8. 13.

판 결 선 고 2014. 9. 17.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3. 5.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성년인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혼인하기 전 배CC(개명 전 : 배DD)와 교제하면서 장래를 약속하였는데, 배CC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반대로 혼인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초부터 원고의 잦은 음주와 외박, 외도 등으로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였다.

라. 그러다가 원고는 1984.경 피고와의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감으로써 별거하게 되었다.

마. 원고는 1994.경 배CC를 다시 만나 경북 김천에서 현재까지 같이 살고 있다.

바. 피고는 원고와의 별거 이후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5호증, 가사조사관의 가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약 30년 동안의 장기간의 별거와 원고와 배CC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등으로 이미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원고와 피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상태를 용인하면서 그동안 원고와의 관계 회복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출산한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된 점,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피고와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로 하여금 홀로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방치한 원고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해소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원고의 유책성도 세월의 경과에 따라 상당 정도 약화되고 원고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법적 평가도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현 상황에 이르러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데 대한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의 법적·사회적 의의는 현저히 감쇄되고, 쌍방의 책임의 경중에 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역시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이는 점, 원고와의 이혼을 거절하는 피고의 혼인계속의사는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가 처한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